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1. 15 선고 2015가합578512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고기술보증기금(소관 : 수원기술평가센터)

피고1. 주식회사 A

2. B

3. C

4. D

5. E

6. 주식회사 케이에스피스틸

7. F

변론 종결2016. 10. 25.

판결 선고2016. 11. 15.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A, B, C, D, E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462,266,720원 및 그중 457,962,192원에 대하여 2015. 11. 27.부터 2016. 3. 17.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B, D과 피고 주식회사 케이에스피스틸 사이에 2015. 3. 6.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주식회사 케이에스피스틸은 피고 B, D에게 대전지방법원 태안등기소 2015. 3. 6. 접수 제492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가. 피고 C과 피고 F 사이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2지분에 관하여 2015. 3. 27. 체결된 매매계약을 81,486,440원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 F은 원고에게 81,486,4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구상금청구에 관한 판단

(사해행위취소청구의 피보전채권)

가. 인정 사실

1) 피고 주식회사 A(이하 'A'라 한다)는 2009. 3. 11. 원고와 사이에 보증원금 500,000,000원, 보증기한 2010. 3. 11.까지1)로 된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원고로부터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았고, 2009. 3. 16.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하여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5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2) 피고 B, C, D, E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당시 피고 A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일체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3)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의 주요 내용은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피고 A와 연대보증인들은

원고에게 원고가 대위변제한 금액 및 이에 대한 대위변제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한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지연손해금률은 2012. 12. 1.부터 현재까지 연 12%이다), 원고가 구상금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지출한 법적절차비용, 피고 A가 기한 내에 주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해지되지 아니한 보증채무에 대하여 보증료 납입 다음 날부터 보증채무 소멸 전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보증료율에 연율 0.5%를 가산한 비율로 계산한 추가보증료 등을 지급한다는 것이었다.

4) 피고 A가 2015. 7. 9. 대출금 이자를 연체하였다가, 2015. 9. 4. 이르러는 대출원금에 대한 변제까지 연체하는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자, 중소기업은행은 원고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2015. 11. 27. 중소기업은행에게 대출원리금 457,962,192원(= 보증원금 450,000,000원 + 이자 7,962,192원)을 변제하였다.

5) 원고는 위 대위변제로 인하여 취득한 구상금채권의 보전을 위해 법적절차비용으로 2,462,618원을 지출하였다. 한편 피고 A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추가보증료는 1,841,910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그렇다면 피고 A, B, C, D, E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462,266,720원(= 대위변제금 457,962,192원 + 법적절차비용 2,462,618원 + 추가보증료 1,841,910원) 및 그중 대위변제금 457,962,192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5. 11. 27.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분 최후 송달일인 2016. 3. 17.까지는 원고가 정한 약정 지연손해금률인 연 12%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식회사 케이에스피스틸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1)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B, D에 대하여 구상금채권을 취득하였다.
2) 피고 A의 대표자인 피고 B와 피고 A의 전 이사이자 피고 B의 동생인 피고 D은 2015. 3. 6. 피고 주식회사 케이에스피스틸과 자신들의 유일한 재산으로서 1/2지분씩 공유하고 있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와 같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도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위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주식회사 케이에스피스틸 앞으로 채권최고액 5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대전지방법원 태안등기소 접수 제4920호로 마쳐졌다. 위와 같은 사해행위에 피고 주식회사 케이에스피스틸의 악의는 추정된다.

3) 원고의 피고 B, D에 대한 구상금채권의 기초가 되는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은 위 근저당권설정계약 전에 존재하였고, 피고 A가 중소기업은행과의 대출기한을 지속해서 연장한 사정 등에 비추어 위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원고의 구상금채권이 발생할 개연성이 있었고, 이후 위 구상금채권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

4) 따라서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주식회사 케이에스피스틸은 피고 B, D에게 원상회복으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3. 피고 F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 사실

1) 피고 C은 2015. 3. 27.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중 각 1/2지분을 아들인 피고 F에게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하였다. 이후 위 각 지분에 관하여 피고 F 앞으로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5. 4. 13. 접수 제71475호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에는 근저당권자 발안농업협동조합, 채무자 B, 채권최고액 300,000,000원으로 하는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당시 위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액수는 245,000,000원이었다.

3)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별지 목록 제2의 나, 다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일부 부동산'이라 한다) 중 피고 C의 각 1/2지분에는 근저당권자 G, 채무자 피고 C, 채권최고액 45,000,000원으로 하는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당시 위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액수는 45,000,000원이었다.

4) 한편,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위 등기소 2015. 7. 16. 접수 제151450호로

근저당권자 G, 채무자 B, 채권최고액 600,000,000원으로 하는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H의 감정 결과, 이 법원의 G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발안농업협동조합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사해행위취소권의 발생

1) 피보전채권의 존재 원고와 피고 A는 이 사건 매매계약 이전에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한 사실, 피고 A는 2015. 7. 9. 대출금 이자를 연체한 사실, 2015. 9. 4. 대출 원금에 대한 변제까지 연체하여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한 사실, 이에 원고는 2015. 11. 27. 중소기업은행에게 대출원리금 457,962,192원 변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아가 다툼 없는 사실 및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된다.

① 피고 C은 피고 B의 처로 2013. 6. 28.까지 피고 A의 이사로 근무했고, 피고 B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뿐만 아니라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피고 A의 대표자로 근무하고 있다. 나아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수인인 피고 F은 피고 B과 피고 C의 아들이다.

② 피고 F은 피고 C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통해 수령한 매매대금을 피고 A의 채무 변제에 활용하였다고 주장하였다(2016. 6. 28.자 준비서면 참조). 이는 오히려 피고 C이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지분을 매도하면서까지 피고 A의 채무를 변제했어야 하는 상황을 말해주는 것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 A의 자력이 충분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③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보증기한은 2010. 3. 11.로 설정되었는데, 피고 A가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매년 보증기한이 6개월 또는 1년씩 연장되었다.

④ 위와 같은 피고 A의 대출기한 연장, 이자 연체, 원금 연체, 원고의 대위변제와 같은 일련의 과정을 보면, 계속해서 피고 A의 자력이 악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을 종합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아직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미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구상금채권의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피고 C이 구상금채무를 부담하게 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 실제로 원고가 2015. 11. 27. 대위변제금을 지급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피고 C이 원고에 대하여 구상금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으므로, 원고의 위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2) 사해행위의 성립 피고 C은 채무초과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지분을 아들인 피고 F에게 매도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C의 사해의사 역시 인정된다. 수익자인 피고 F의 악의는 추정된다.

3)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 C의 지분에 공동담보 부분이 없었는지 가) 피고 F의 주장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피고 C 1/2지분의 가액은 175,000,000원이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는 발안농업협동조합의 근저당권, 이 사건 일부 부동산 중 피고 C의 1/2지분에는 G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매매 목적물인 피고 C의 지분에는 공동담보 부분이 존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하지 않으므로, 사해행위가 아니다.

나) 판단

갑 제14호증의 기재, 감정인 H의 감정 결과, 이 법원의 G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발안농업협동조합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피고 C 1/2지분의 가액 및 근저당권들의 채권최고액, 피담보채무액은 다음 표와 같다.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	500,386,560원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피고 C 1/2지분의 가액	250,193,280원 (A)2) 500,386,560원 × 1/2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및 피담보채무액	
목적물	발안농협 근저당권
이 사건 각 부동산	이 사건 일부 부동산 중 피고 C의 1/2지분
채권최고액	300,000,000원
피담보채무액	245,000,000원
피고 C 지분에 안분한 피담보채무액	122,500,000원 (B)3) 245,000,000원 × 1/2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피고 C 1/2지분의 공동담보가액은 82,693,280원(= A-(B+C))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F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G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사해행위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가액배상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에는 발안농협협동조합의 근저당권이, 이 사건 일부 부동산 중 피고 C의 1/2지분에는 G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갑 제14호증의 기재, 감정인 H의 감정 결과, 이 법원의 G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발안농협협동조합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과 가까운 시점의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피고 C 1/2지분의 가액 및 근저당권들의 채권최고액, 피담보채무액은 다음 표와 같다.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	497,972,880원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피고 C 1/2지분의 가액	248,986,440원 (a)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및 피담보채무액	
목적물	발안농협 근저당권5) 이 사건 변론종결일과 가까운 2016. 1. 3. 기준. 이 법원의 발안농협협동조합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결과에 의하면, 발안농협협동조합 근저당권의 채무자 B은 2016. 1. 3.까지 매달 위 근저당권부 채무의 이자를 변제하여 이자 연체가 없었다. 따라서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은 245,000,000원일 것으로 추인한다.
이 사건 각 부동산	이 사건 일부 부동산 중 피고 C의 1/2지분
채권최고액	300,000,000원
피담보채무액	245,000,000원
피고 C 지분에 안분한 피담보채무액	122,500,000원 (b)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81,486,440원 $\{= a-(b+c)\}$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F은 그 원상회복을 위해 원고에게 위 81,486,4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피고 F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해행위취소 상대방에 관하여 가) 피고 F의 주장

이 사건 매매계약이 없었더라면 전득자인 G가 수익자가 되었을 것이라는 점, G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면 충분히 원상회복을 받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수익자인 피고 F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판단

그러나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 수익자와 전득자가 모두 악의인 경우에도 채권자는 수익자와 전득자 모두를 상대방으로 하거나 그중 한 사람을 상대방으로 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또는 가액배상을 구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F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선의의 수익자라는 주장에 관하여 피고 F은 피고 C을 도와줄 의사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라는 점에 대해서 선의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F이 피고 C과 모자관계에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을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F이 선의의 수익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 F의 선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김범준

판사강민정

판사강동훈

별지

1) 이후 보증원금은 450,000,000원으로, 보증기한은 2015. 9. 4.로 변경되었다.

2) $500,386,560원 \times 1/2$

3) $245,000,000원 \times 1/2$

4) 이 사건 변론종결일과 가까운 2016. 1. 21. 기준.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도 같을 것으로 추인한다.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결과에 의하면, 발안농업협동조합 근저당권의 채무자 B은 2016. 1. 3.까지 매달 위 근저당권부 채무의 이자를 변제하여 이자 연체가 없었다. 따라서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수는 245,000,000원일 것으로 추인한다.